

2020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I. 예산개요

1. 세입예산

■ 2020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019년도 최종 예산 (5백만원) 대비 17.7% 감액된 4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 년도	2019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4,560	4,560	3,752	△808	△808	-17.7	-17.7
세외수입	4,560	4,560	3,752	△808	△808	-17.7	-17.7
경상적세외수입	0	0	36	36	36	-	-
이자수입	0	0	36	36	36	-	-
임시적세외수입	4,560	4,560	3,716	△844	△844	-18.5	-18.5
기타수입	4,560	4,560	3,716	△844	△844	-18.5	-18.5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 년도	2019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4,560	4,560	3,752	△808	△808	-17.7	-17.7
경상적세외수입	0	0	36	36	36	-	-
이자수입	0	0	36	36	36	-	-
기타이자수입	0	0	36	36	36	-	-
임시적세외수입	4,560	4,560	3,716	△844	△844	-18.5	-18.5
기타수입	4,560	4,560	3,716	△844	△844	-18.5	-18.5
그외수입	4,560	4,560	3,716	△844	△844	-18.5	-18.5

2. 세출예산

-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 세출예산은 15억 6천 2백만원으로 전년(12억 7천 3백만원) 대비 22.6% 증액된 수준임.

(단위: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19년대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1,273,699	1,562,480	288,781	22.6%	
행정관리	소 계	1,273,699	1,562,480	288,781	22.6%
	행정운영경비	48,169	52,762	4,593	9.5%
	재무활동	-	-	-	-
	사업비	1,225,530	1,509,718	284,188	23.1%

- 2020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9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20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1,261,099	1,273,699	1,562,480	301,381	23.8%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1,225,530	1,225,530	1,509,718	284,188	23.1%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익확산	1,225,530	1,225,530	1,509,718	284,188	23.1%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206,400	206,400	227,300	20,900	10.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85,500	85,500	68,200	△17,300	-20.2%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운영	49,560	49,560	52,560	3,000	6%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84,500	384,500	389,588	5,088	1.3%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89,000	89,000	129,000	40,000	44.9%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54,000	154,000	184,000	30,000	19.4%
인권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67,650	67,650	67,650	0	0%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32,000	32,000	32,000	0	0%
서울 인권 콘퍼런스	139,100	139,100	271,600	132,500	95.2%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7,820	17,820	17,820	0	0%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0	0	70,000	70,000	-

II.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7% 감액된 4백만원임.

1) 정상적 세외수입

- 2020년도 인권담당관의 정상적 세외수입은 서울시가 교부한 보조금으로 인해 보조금 지원단체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반납 수입(36,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자수입’의 경우는 매년 세입 발생이 예상되는 정상적 수입으로 매년 수납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다가 2020년에는 세입 예산(36천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세입 추계를 반영한 적정 세입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예산안〉

(단위 :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결산전망	
-	-	-	-	-	38	-	48	48	36

□ 2020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0년 전망액 : 36천원
- 산출내역 : 보조금 지원단체(10개 이상)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금액과 집행시기에 따라 이자액이 달리 결정되므로 매년 징수액 편차가 발생하여 예측이 어려우나, 편차가 적은 최근 3년 간 보조금 이자 반환 금액의 평균치를 2020년 징수전망액으로 산출하였음
→ (23천원 + 38천원 + 48천원) ÷ 3년 = 36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예상)
보조금 이자	37천원	76천원	32천원	23천원	38천원	48천원

2) 임시적 세외수입

- 2020년도 인권담당관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인권담당관 보조금 지원 사업 정산검사 후 보조금 집행잔액, 부당집행 반납금(371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 인권담당관은 2019년 ‘그외수입’의 예산편성(456만원) 대비 결산 전망(208만원)금액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바, 2020년 세입 편성 예산(371만원)이 적정한 세입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예산안〉

(단위 :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결산전망	
-	202	-	1,001	30	37	4,560	2,082	2,082	3,716

□ 2020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0년 전망액 : 3,716천원
- 산출내역 : 보조금 지원단체(10개 이상)의 집행실적에 따라 징수액이 결정되므로 매년 징수액 편차가 발생하여 예측이 어려우나, 편차가 적은 최근 3년 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금액의 평균치를 2020년 징수전망액으로 산출하였음
→ (4,671천원 + 4,395천원 + 2,082천원) ÷ 3년 = 3,716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예상)
보조금 반환금	21,740천원	5,079천원	11,115천원	4,671천원	4,395천원	2,082천원

2. 세출예산 검토

-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 세출예산은 15억 6천 2백만원으로 전년(12억 7천 3백만원) 대비 22.6% 증액된 수준임.

가. 증액·감액 사업 현황

- 인권담당관 소관 20% 이상 주요 증액사업은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서울 인권 콘퍼런스’ 등 2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증액사업 현황(20%)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9년도	2020년도	증감		증가사유
				증 감	비율(%)	
1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89,000	129,000	40,000	44.9	청년자율예산 추가 편성
2	서울 인권 콘퍼런스	139,100	271,600	132,500	95.2	격년마다 국제콘퍼런스로 확대 개최

- 인권담당관 소관 20%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업으로 최근 3년간 평균집행금액을 반영하여 감액하려는 것임.

〈 주요 감액사업 현황(20%)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19년도	2020년도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85,500	68,200	△17,300	-20.2	최근 3년간 평균집행금액 반영

〈최근 3년간(2016~2018) 집행률 현황〉

(단위 : 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90,000	66,449	73.8	90,000	66,203	73.5	85,500	54,818	64.1

나.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증액)

- 본 사업은 인권정책을 홍보하고, 인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인권감수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8천 9백만원) 대비 44.9%(4천만원) 증액한 1억2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당초	최종(A)			
계	89,000	89,000	129,000	40,000	44
사무관리비	48,000	48,000	48,000	0	0
행사운영비	41,000	41,000	81,000	40,000	97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인권 침해 상담·신고 홍보 자료 제작 5,000,000원 = 5,000천원	○ 인권 침해 상담·신고 홍보 자료 제작 5,000,000원 = 5,000천원
	○ 인권홍보 동영상 제작 22,000,000원 = 22,000천원	○ 인권홍보 동영상 제작 22,000,000원 = 22,000천원
	○ 인권정책 홍보 자료 제작 21,000,000원 = 21,000천원	○ 인권정책 홍보 자료 제작 21,000,000원 = 21,000천원

- ‘사무관리비’중 인권홍보 동영상 제작은 전년과 동일한 2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인권홍보 동영상 제작비’는 2018년에 전액 불용된데 이어 2019년도에도 동영상은 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에 재차 편성하고 있는 바, 전례답습적인 예산 편성은 아닌지 여부와 실제 소요에 따른 편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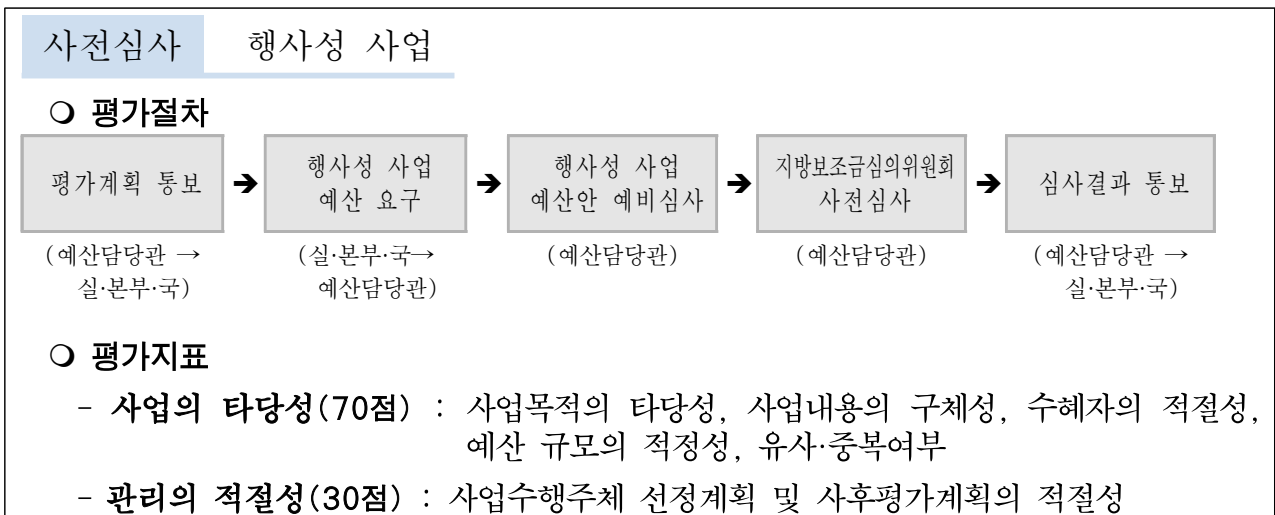
- 또한, ‘인권홍보 동영상 제작’ 예산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서에 “1식”으로 표기되어 있어 의회가 인권홍보 동영상 제작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한편, 2019년에는 ‘인권홍보 동영상 제작’ 예산을 ‘인권정책 홍보 자료 제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바, 사무관리비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타 예산과목에 비해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이나 자의적 예산 집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여지는 없는지와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예산편성 시 실소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편성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 2019년도에도 인권홍보예산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를 ‘인권문화행사(1,500만원)’,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제작(2,689만원)’, ‘인권침해 상담신고 대시민 홍보물 제작 (600만원)’비용을 집행 및 집행을 계획하고 있음.

〈2019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사용내역	2019예산액	집행금액	집행사유
	합계	48,000	47,895	
인권담당관	상반기 인권문화행사 (2019 인권 사진전)	48,000	15,000	시민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인권 문화행사 확대 실시(5월)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제작 (2017~2018)		26,895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에 의거 2년 주기로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침해 상담신고 대시민 홍보물 제작		6,000 (예정)	12월 인권문화행사 시 홍보자료 활용 위한 제작 예정

- 또한, 인권행사를 위해 전년(4천만원)대비 102.5% 증액된 8천 1백만원의 ‘행사운영비’를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청년자율예산(인권문화 전시전 2,050만원, 청년인권캠페인 700만원, 인권단편영화 상영 등 총 5천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행사성 예산은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후, 예산담당관의 예비심사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완료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 본 사업은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실천을 위해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44.9%(508만원) 증액한 3억 8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384,500	384,500	389,588	5,088	1
사무관리비	376,500	376,500	381,588	5,088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	8,000	8,000	0	0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인권아카데미(인권교육) 211,200,000원 = 211,200천원 - 4급이상 = 2,900천원 ▷ 강사료 500,000원(특별2급, 2시간)*5회 = 2,500천원 ▷ 강사료 80,000원(보조, 2시간)*5회 = 400천원 - 위탁복지시설장 = 2,740천원 ▷ 강사료 500,000원(특별2급, 2시간)*3회 = 1,500천원 ▷ 강사료 80,000원(보조, 2시간)*3회 = 240천원 - 본청 = 32,250천원 ▷ 강사료 350,000원(일반1급, 2시간)*75회 = 26,250천원 ▷ 강사료 80,000천원(보조, 2시간)*75회 = 6,000천원 - 사업소 = 45,150천원 ▷ 강사료 350,000원(일반1급, 2시간)*105회 = 36,750천원 ▷ 강사료 80,000원(보조, 2시간)*105회 = 8,4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인권아카데미(인권교육) = 215,020천원 - 4급이상 = 2,800천원 ▷ 강사료(특별2급, 2시간) 480,000원*5회 = 2,400천원 ▷ 강사료(보조, 2시간) 80,000원*5회 = 400천원 - 위탁복지시설장 = 2,800천원 ▷ 강사료(특별2급, 2시간) 480,000원*5회 = 2,400천원 ▷ 강사료(보조, 2시간) 80,000원*5회 = 400천원 - 본청 = 30,800천원 ▷ 강사료(일반1급, 2시간) 360,000원*70회 = 25,200천원 ▷ 강사료(보조, 2시간) 80,000원*70회 = 5,600천원 - 사업소 = 48,400천원 ▷ 강사료(일반1급, 2시간) 360,000원*110회 = 39,600천원 ▷ 강사료(보조, 2시간) 80,000원*110회 = 8,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자출연기관 = 12,900천원 ▷ 강사료 350,000원(일반1급, 2시간)*30회 = 10,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 14,960천원 ▷ 강사료(일반1급, 2시간) 360,000원*34회 = 12,240천원

- 또한, 인권교육을 특정기관(인권정책연구소)에서만 수행하고 있는 바, 다양한 교육기관의 참여를 허용하여 서울시 및 출연·출자 기관에 부합하고 적합한 주제로 전문화된 교육기관을 선정하게 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년 도	횟 수	기 관
합 계	645회	
2019	222회	인권정책연구소
2018	218회	인권정책연구소
2017	205회	한국정책개발연구원(통합과정) 한국생산성본부(일반과정)

- 한편, 인재개발원에서도 e러닝 인권강의와 성희롱인권과 장애인인권에 대한 집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인권교육의 중복성과 교육의 통합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와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 인재개발원과 협의와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 서울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인권친화적 문화형성과 일상에서 인권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 장소에 대한 공간조성 및 탐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6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67,650	67,650	67,650	0	0
사무관리비	64,650	64,650	64,650	0	0
공공운영비	3,000	3,000	3,000	0	0

〈산출 근거〉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동판(표지석) 추가 설치 1,500,000원*5개소 = 7,500천원 ○ 체험프로그램 운영 42,650,000원 = 42,650천원 ○ 인권현장 홍보콘텐츠 개발 14,500,000원 = 14,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동판 추가 설치 = 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동판 추가 설치 1,000,000원*5개소 = 5,000천원 ○ 체험프로그램 운영 = 57,2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현장 자문위원회 운영(업체 내부) 1,000,000원 = 1,000천원 - 인권해설사 강사료(일반1급, 2시간) 360,000원*20회*2명 = 14,400천원 - 인권해설사 강사료(일반2급, 2시간) 225,000원*20회*2명 = 9,000천원 - 7개 코스별 활동지, 포스터, 리플릿 5,600,000원*1식 = 5,600천원 - 답사진행경비 500,000원*20회 = 10,000천원 - 탐방차량 임차 9,000,000원*1식 = 9,000천원 - UCC제작 및 홍보 4,000,000원*1식 = 4,000천원 - 일반관리비 2,250,000원 = 2,250천원 - 인쇄제작 및 배부 2,000,000원*1식 = 2,000천원 ○ 위원회 운영비 = 2,4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비 1,200,000원*1회 = 1,200천원 - 자문회의 운영비 400,000원*3회 = 1,200천원
	증감사유	
공공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동판(표지석) 유지보수 500,000원*6개 = 3,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동판 유지보수 500,000원*6개 = 3,000천원
	증감사유	

- 동 사업은 민주화(4월길·6월길), 남산(자유길), 사회연대(여성길·시민길), 노동(전태일길·구로길)을 포함한 총 4개 테마를 중심으로 탐방이 운영중에 있으나, 연도별 참여인원수(2017년 1,329명→2018년 1,380명→2019년 917명)가 감소하고 있는 바, 감소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체험코스의 다양화와 실제 집행 예산이 감안된 세부 산출기초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개요

-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은 2016년 공무원 대상 시범실시 후, 2017년 첫 시행 되었으며, 현재 3년차 운영 중.
- 실제 탐방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의 여건을 종합하여 코스 변동.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천원)

연도	프로그램명	계획인원 (명)	실참여인원 (명)	운영회차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2017	서울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1,200	1,329	25회	60,400	51,910
2018	서울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1,300	1,380	31회	54,900	49,975
2019	서울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1,300	917	39회	57,150	35,240

- 특히, 4개 테마중 구로길 코스는 차도와 인접하여 단체로 체험하기에는 안전상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잠정 중단되고 있는 바, 이것이 예산 집행 실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코스 개발시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선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인권담당관은 구로길 코스의 동선을 변경한 이후 2020년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함.

- 또한, 2019년 예산편성시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코스를 7개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6개 코스가 운영 중에 있는 바, 계획 대비 미운영에 따른 예산의 사장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 보아야 할 것임.

- 둘째, 현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UCC제작 및 홍보 예산을 편성(4백만원)하고, 2019년 현재 UCC응모중에 있으나 응모실적이 저조(1건 접수)하여 당초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예산의 적정성과 함께 조정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UCC공모 실적〉

연도	사 업	접수현황(명)	수상내역(팀)	수상실적물 홍보내역
2017년	-	-	-	-
2018년	인권현장체험 프로그램 UCC 공모	21명	인권상 3팀, 협력상 3팀, 나눔상 3팀	인권문화행 사 기간 중 시
2019년	인권현장체험 프로그램 UCC 공모	공모 중	-	-

- 또한, 최근 3년간 인권 현장프로그램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5억 3백만원을 이월한 후 1,500만원이 불용되었고, 2017년 1천만원, 2018년도 1천 2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에 전년도와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전례답습적인 예산 편성은 아닌지 여부와 철저한 산출 기초를 통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6	70,000	502,920	0	572,920	558,002	0	14,918
2017	67,900	0	0	67,900	57,902	0	9,998
2018	67,650	0	0	67,650	55,495	0	12,155

- 한편, 외국인의 참여 현장체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바, 외국어 통역의 사전 준비와 관련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탐방 코스 안내표

○ 2019년

테마명	코스명	코스 설명	소요시간
민주화	4월길	청와대 영빈관 앞→4.19 혁명 50주년 기념탑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옛 국회의사당(서울시의회)→옛 대법원 터(서울시립미술관)→옛 이기붕집터(4.19 혁명 기념도서관)	4km (2시간)
	6월길	옛 남영동 대공분실 터(민주인권기념관)→서울역 (국민평화 대행진)→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6월 항쟁의 시작)→서울시청 광장→향린교회(민주헌법쟁취 국민 운동본부 발기인 대회)→명동성당 (6월 항쟁농성)	6km (2시간)
남산	자유길	옛 안기부 6국(인권기념관 “기억6” 조성 중)→옛 주차 파출소 터→옛 안기부 제1별관 터→옛 안기부 본관(서울 유스호스텔)→ 옛 안기부 제6별관(서울종합방재센터)→소릿길→옛 안기부 제5별관(서울시 남산 청사)	1.5km (1시간40분)
사회연대	여성길	일본대사관(평화의 소녀상)→옛 근우회 터→청계광장→옛 한성권번 터(프리미어 플레이스)→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이화학당)	4km (2시간)
	시민길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인권재단 사람→옛 두리반 칼국수집 터→망원유수지 터	5km (2시간) ※ 차량 이동
노동	전태일길	평화시장→전태일 동상과 다리(옛 청계피복노조 사무실 경유)→전태일 기념관	2km (2시간)
	구로길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옛 선화기숙사(성프란체스코 장애인 종합복지관)→옛 가리봉 오거리(디지털단지 오거리)→옛 대우어패럴(현 현대아웃렛)→옛 구로 노동자 문학회와 구로노동상담소→옛 모세미용실(점거시위)→옛 신흥정밀(박영진 분신)	2.8km (1시간 40분)

○ 2018년

테마명	코스명	코스 설명	소요시간
민주화	4월길	옛 경무대 터(청와대 사랑채 분수대)→4.19 혁명 50주년 기념탑(광화문 시민열린마당)→서울광장 →옛 국회의사당(서울시의회)→옛 대법원 터(서울시립 미술관)→옛 이기봉집터(4.19혁명 기념도서관)	4km (2시간)
	6월길	옛 남영동 대공분실 터→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6.10국민대회 1차 집결지)→서울시청광장→향린교회(‘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발기대회)→명동성당(6월항쟁 농성)	6km (2시간)
남산	자유길	옛 통감관저 터(기억의 터)→옛 안기부 본관(서울유스호 스텔)→옛 안기부 제6별관→소릿길→옛 안기부 제5별 관→옛 안기부 제1별관 터	1.5km (1시간40분)
사회연대	여성길	일본대사관(평화의 소녀상)→옛 근우회 터→청계광장 →옛 한성권번 터(프리미어 플레이스)→서울광장→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이화학당)	4km (2시간)
	시민길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인권재단 사람→옛 두리반 칼국수집 터→망원유수지 터	5km (2시간)
노동	전태일길	평화시장→전태일 동상과 다리(옛 청계피복노조 사무실 경유)→한울삶(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태일 재단	2km (2시간)
	구로길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옛 선화기숙사(성프란체스 코 장애인 종합복지관)→옛 가리봉 오거리(디지털단지 오거리)→옛 대우어패럴(현 현대아웃렛)→옛 구로 노동자 문학회와 구로노동상담소→옛 모세미용실(점거시위) →옛 신흥정밀(박영진 분신)	2.8km (1시간 40분)

○ 2017년

테마명	코스명	코스 설명	소요시간
민주화	4월길	옛 사상계 터→옛 내무부 터(하나은행 본점)→옛 국회의사당(서울시의회)→옛 대법원 터(서울시립미술관)→옛 이기봉집터(4.19혁명 기념도서관)	4km (2시간)
	6월길	명동성당(6월항쟁 농성)→향린교회('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발기대회)→서울시청광장→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6.10국민대회 1차 집결지)→서울역 광장(6.26 국민평화행진)	6km (2시간)
남산	자유길	옛 안기부 6국(서울시 남산 제2청사)→옛 주자과출소 터→옛 안기부 제1별관 터→옛 안기부 본관(서울유스호스텔)→옛 중정, 안기부 제6별관(서울종합방재센터)→소릿길→옛 안기부 제5별관(서울시 남산 청사)	1.5km (1시간40분)
사회연대	여성길	일본대사관(평화의 소녀상)→옛 근우회 터→광화문광장→옛 한성권번 터(프리미어 플레이스 건물 앞)→옛 이화학당(이화박물관)	4km (2시간)
	시민길	망원유수지 터→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옛 두리반 칼국수집→인권운동 사랑방	5km (2시간)
노동	전태일길	동대문 평화시장(다락방)→전 청계피복노조사무실(전태일 동상과 버들다리)→한울삶(유가협)→전태일재단(노동자들의 쉼터)	2km (2시간)
	구로길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옛 선화기숙사(성프란체스코 장애인 종합복지관)→옛 가리봉 오거리(디지털단지 오거리)→옛 대우어패럴(현 현대아웃렛)→옛 구로 노동자 문학회와 구로노동상담소→옛 모세미용실(점거시위)→옛 신흥정밀(박영진 분신)	2.8km (1시간 40분)

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동 사업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하는 단체를 지원하고자 전년과 동일한 3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32,000	32,000	32,000	0	0
사무관리비	2,000	2,000	2,000	0	0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30,000	30,000	0	0

〈산출 근거〉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2,000,000원 = 2,000천원	○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2,000,000원 = 2,000천원
	증감사유	
	증감 내역 없음	
민간경상사업보조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선정단체 사업비 지원 30,000,000원*1개 단체 = 30,000천원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선정단체 사업비 지원 30,000,000원*1개 단체 = 30,000천원
	증감사유	
	증감 내역 없음	

-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련 법령(「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인권담당관에서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사업비(보조금)를 지원하고 있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다만, 동 사업의 지원단체는 서울시 공모 절차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고 있으나, 1개 단체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특정 단체에만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동 단체가 6개 자치구(종로구·중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에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은 예산 지원시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소재 5개 센터 현황〉

센터명	자치구명	센터명	자치구명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6개구)	소계	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구)	소계
	종로		양천구
	중구		강서구
	동작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서초구		영등포구
	강남구		
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4개구)	소계	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6개구)	소계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북구
	송파구		중랑구
	강동구		강북구
	도봉구		
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4개구)	소계		노원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2015년~2019년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언제까지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다른 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 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도와의 현황 비교(분석)자료〉

지자체	예산지원(단위:천원)			주요사업	비고
	2017	2018	2019		
서울	30,000	30,000	30,000	-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1개소 지원 -법률·경제·의료 등 경제적 지원 -교육·홍보 등 지원	
부산	150,000	190,000	190,000	-3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2개소 지원 -법률·경제·의료 등 경제적 지원 -교육·홍보·현장 등 지원	
대구	75,000	75,000	75,000	-2개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구호금지원 -교육·홍보·현장 등 지원	
인천	99,160	138,000	152,000	-1개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법률·경제·의료 등 경제적 지원 -교육·홍보·신변보호 등 지원	
광주	139,000	139,000	228,000	-1개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생계비, 의료비, 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 -힐링캠프, 문화의밤 등 비경제적지원	
대전	50,000	50,000	50,000	-1개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긴급구호, 신변보호, 의료지원, 생계비, 취업지원 등	
울산	120,000	120,000	123,000	-1개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상담·의료·법률·피해자지원금 지원 등	
강원	60,000	60,000	60,000	-6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5개소 지원 -법률·경제·의료 등 경제적 지원 -교육·홍보 등 지원	
경기	-	180,000	180,000	-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경제적 지원, 법률상담 및 신변보호 등	
경남	100,000	100,000	100,000	-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6개소 지원 -경제적 지원, 법률상담 및 신변보호 등	
경북	70,000	70,000	80,000	-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센터 지원 -경제적 지원, 법률상담 및 신변보호 등	
전남	30,000	30,000	30,000	-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1개소 지원 -경제적 지원, 법률상담 및 신변보호 등	
전북	70,000	70,000	70,000	-4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2개소 지원 -경제적 지원, 법률상담 및 신변보호 등	
충남	243,000	243,000	243,000	-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1개소 지원 -법률·경제·의료 등 경제적 지원 -교육·홍보 등 지원	
충북	30,000	30,000	60,000	-4개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법률·경제·의료 등 경제적 지원	
제주	85,000	86,300	81,070	-1개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경제적 지원, 법률상담 및 신변보호 등	
세종	20,000	20,000	20,000	-1개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경제·의료적 지원	

- 한편, 최근 3년간 범죄피해자 구조를 위한 사업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2016년 640만원→ 2017년 169만원→ 2019년 81만원)하고 있는 바, 사업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과 보조금 정산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6	37,600	0	0	37,600	31,193	0	6,407
2017	32,600	0	0	32,600	30,905	0	1,695
2018	32,000	0	0	32,000	31,187	0	813

바. 인권담당관 위원회(인권위원회,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관련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6천8백만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5천3백만원) 운영을 위해 1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85,500	85,500	68,200	△17,300	△20
사무관리비	61,500	61,500	47,200	△14,300	△2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0	14,000	14,000	0	0
행사실비지원금	10,000	10,000	7,000	△3,000	△30

〈시민인권 침해구제위원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49,560	49,560	52,560	3,000	6
사무관리비	49,560	49,560	52,560	3,000	6

- 2019년 인권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총 10회가 개최되어 최근 2년(2017년 26회 → 2018년 25회)에 비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과년도 대비 실적을 맞추기 위해 하반기 및 연말에 몰아치기식 회의 개최로 부실운영의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단위 : 천원, 회 / 2019.10.31.현재)

위원회 명	산 출 기 초	2017년			2018년			2019년(10.31)		
		예산액	집행액	개최 실적	예산액	집행액	개최 실적	예산액	집행액	개최 실적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소 계	90,000	66,203	-	85,500	54,818	25	82,500	36,428	-
	위원회 회의 개최	44,000	36,585	26	45,500	27,872	20	45,500	18,499	10
	인권위원회 포럼	10,200	7,565	2	16,000	4,088	1	13,000	4,560	1
	인권행정 공동연수 개최	4,500	5,516	2	4,000	3,597	1	4,000	-	-
	인권위원회 5주년 토론회	7,100	-	-	-	-	-	-	-	-
	자자체 인권위원회 협력구축	10,200	2,538	4	6,000	5,292	3	6,000	-	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0	13,999	-	14,000	13,969	-	14,000	13,369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소 계	29,950	28,427		41,960	35,753	14	49,560	41,756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회의	29,950	27,427	15	26,600	13,549	14	25,800	20,066	17
	결정례집 발간 등	-	-	-	15,360	22,204	-	23,760	21,690	-

- 인권위원회의 개최 미비, 포럼 축소 개최,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력 구축 등 인권위원회 활동실적 및 성과 미비 등 집행 저조에 따라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시 필요 분야의 외부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사업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사.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본 사업은 강제 철거현장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사실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통해 철거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4천3백만원) 대비 13.3%(5백만원) 감액한 3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42,598	42,598	37,598	△5,000	△11
사무관리비	6,598	6,598	6,598	0	0
국외업무여비	35,000	35,000	30,000	△5,000	△14
포상금	1,000	1,000	1,000	0	0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7,820,000원 = 17,820천원	○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7,820,000원 = 17,820천원
	-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활동수당 150,000원*80회 = 12,000천원	-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활동수당 150,000원*80회 = 12,000천원
	- 자료집 제작 = 800천원	- 자료집 제작 = 800천원
	- 행사운영비 = 3,600천원	- 행사운영비 = 3,600천원
	- 인권지킴이단 운영 관련 소모품 구입 = 1,420천원	- 인권지킴이단 운영 관련 소모품 구입 = 1,420천원

○ 동 사업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구성은 1개조 4명(인권과·도시재생·자치구·변호사)을 기본으로 하며, 현장의 규모나 투입되는 공권력의 규모, 철거대상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조별 단위를 늘려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연도별 운영 횟수가 감소하고 있고,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아 운영상 누수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임.

※ 2017년도 : 69회 운영(변호사 미참석 6회), 2018년도 : 78회 운영(변호사 미참석 17회), 2019년도 : 51회 운영(변호사 미참석 3회)

〈인권지킴이단 수당 지급 기준〉

활동수당 지급 기준	
활동시간별	수 당
2시간 이하	100,000원
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150,000원
4시간 초과 ~ 6시간 이하	200,000원

※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 개선계획」(재생협력과-8806) 지급기준 적용

〈예산액(예산과목), 집행액, 집행잔액〉

(단위 : 천원)

연 도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7년	예산 미 편성으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에서 변호사 활동수당 지급함				
2018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 무 관 리 비	16,800	16,467	333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	982	18
2019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 무 관 리 비	17,820	8,820	9,000

전문위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김 정 덕
------	-------	-------	-------